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1.3.29)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1. 3. 12
- 나. 제출자 : 사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1. 3. 12(의안 제9호)
- 라. 심사일자 : 제53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1. 3. 23)
제53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01. 3. 28)

2. 제안이유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조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으로 새로운 관광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함.

3. 주요골자

- 가. 관리운영 사항(안 제3조)
 - (1) 유람선은 시장이 관리 운영
 - (2) 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 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 운영
 - (3) 위탁시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 체결
 - (4) 유람선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
 - (5)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 나. 유람선 위탁업무(안 제5조)
- 다. 위탁운영자 선정(안 제6조)
- 라. 수탁관리자의 의무(안 제7조)

4. 전문위원심사보고

- . 동 조례안은 거북선형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사천시장의 직접 운영보다 위탁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한 조례임.
- . 가장 중요한 사용요율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에 공유재산의 대부분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사용요율을 정하였음.
-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 1000분의 10, 1000분의 25, 1000분의 40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이렇게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규정한 것은 거북선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보다 우리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율을 정하도록 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함.
- . 제출된 조례안 중 용어가 불분명하여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거나, 중복된 규정등은 별첨하는 수정안과 같이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사용료율 인상 (1,000분의 10 → 1,000분의 15)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첨부 : 수정안 1부.

< 수정 안 >

당 초 (안)	수 정 (안)
제3조(관리운영 등) ①…… ②…… ③제1항의…… ④제1항의……	제3조(관리운영 등) ①…… ②…… ③제2항의…… ④제2항의……
제6조(위탁운영자의 선정)……	제6조 삭제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②…… ③…… ④…… ⑤…… <u>⑥수탁관리자는 ……</u> ⑦…… ⑧……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8조(위탁운영 기간)……	제7조 (위탁운영 기간)……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제9조 삭제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1.…… 2.…… 3.…… 4.…… <u>5. 기타 시장이……</u> ②……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1.…… 2.…… 3.…… 4.…… ②……
제11조(대부료율과대부재산의평가) 유람선의 연간 <u>대부료 또는</u> 사용료의 효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을 하한으로하여 <u>위탁운영자 선정시 참가한 수탁자가 응찰한 금액으로하고</u> , 최초평정가격은 건조원가를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율과재산의평가) 유람선의 연간 사용료의 효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5를 하한으로 하고, 최초 평정가격은 건조원가를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